

2.1.4.2.3.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

- ❑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기관위원회를 구성 및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 이에 따라 다음의 기관위원회 구성 현황에 관한 본 지침의 권고서식 [제4호 서식]과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❑ 다만,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관위원회 업무의 수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권고서식

[제4호 서식]

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현황								
기관명								
구 분	성명	성 별	소속	직위	전공	과학/ 비과학	학력	비고
당해 기관 종사자	홍○○	남	○○대학교	교수	의학	과학	박사	위원장
외부인사 (1인 이상)								
본 의료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구성 현황이 위와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년 월 일 기관장 (서명 또는 인) 질병관리본부장 귀하								